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월 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·규칙의 규제개선을 협조함에 따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함.(안 제 11조)
 -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
→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 및 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당해 월을 제외한”을 “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6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·규칙의 규제개선을 협조함에 따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함.(안 제11조)

- 취소 월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잔여 월분만 반환
→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하여 반환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 및 제7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당해 월을 제외한”을 “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의한다”

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. 다만, 일요일과 관공서의 <u>기타</u>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.</p>	<p>제4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따른</u>----- -----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 (기능) (생 략)</p> <p>1.~4. (생 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6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
<p>제7조 (시설의 이용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7조(시설의 이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9조 (사용허가의 제한) ① (생 략)</p> <p>1.~7.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제2항</u>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(사용료 등) ①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<u>의한</u> 사용료·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<u>의한</u>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<u>의한</u>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</p> <p>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<u>의한</u>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</p> <p>4. 「모·부자복지법」에 <u>의한</u> 보호받는 모·부자가정 세대</p> <p>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<u>의한</u> 등록 장애인</p> <p>6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<u>제8조에 따라</u> ----- -----<u>따른</u>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2. ----- -----<u>따른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<u>따른</u> -----</p> <p>4. -----<u>따른</u> -----</p> <p>5. ----- <u>따른</u> -----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사용료 등의 반환) (생략)</p> <p>1. 재해, <u>기타</u>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<u>의하여</u>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·수강료의 전액을 반환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<u>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</u> 수강료를 반환</p>	<p>제11조(사용료 등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u>따라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와</u> ----- -----</p>
<p>제12조 (변상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타</u>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<u>의한다.</u></p>	<p>제12조(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그 밖에</u> ----- --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<u>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 (위탁관리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타 수련시설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, 그 절차 및 방법은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그 밖에 ----- ----- --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 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6조 (위탁의 취소)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</p>	<p>제16조(위탁의 취소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1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7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